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일괄 정비〉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5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적으로 삭제 · 정비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30.

다.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일괄 정비

구 분	개 정
귀속재산처리법	○ 귀속재산 매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담배사업법	○ 담배제조업허가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담배소매인 지정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본 법률안은 피한정후견인이기만 하면 각종 자격, 영업이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일괄적으로 삭제·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의 귀속재산 매수인에 있어 피한정후견인 배제 규정, 「담배사업법」의 담배제조업허가, 담배판매업 등록 및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피한정후견인 배제 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에 있어 피한정후견인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민법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였음¹⁾. 성년후견제도의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되며 한정후견은 성년후견²⁾과 달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대리권·동의권·취소권을 가지게 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현행 「귀속재산처리법」, 「담배사업법」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서는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담배판매업 등록이나 담배 소매인 지정, 조합 임원 등의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각종 자격에서 배제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는 동 법률안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1)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2) 성년후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취소권이 인정되며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자유 보장 등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담배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담배사업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을 부담³⁾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판단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⁴⁾함으로써 국내 연초경작산업과 경작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높은 사무처리 능력을 갖추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참고로 「농업협동조합법」⁵⁾, 「수산업협동조합법」⁶⁾등에서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⁷⁾,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⁸⁾ 등에서는 등록이나 허가의 결격

3)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소매인은 ‘담배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제25조)’, 담배 성분 표시(제25조의2), 오도문구 사용제한(제25조의5) 등 각종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제27조 등), 과태료(제28조)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이사·전무이사 및 감사를 두며(제19조),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사업계획, 예결산, 업무집행 등에 관하여 의결함(제18조)

5) 「**농업협동조합법**」 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각 법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은 수용하나 실질적으로 귀속재산 매각 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어 개정 실익은 없다는 의견임.

「담배사업법」의 경우 담배사업자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행위와 법적의무를 수반하며, 의무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르므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 보유여부’를 사전에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령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보유여부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경우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 임원은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므로 사전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령상 사전적 수행능력 입증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귀속재산처리법 (안 제1조)	
第9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歸屬財産의 買收人이 될 수 없다.	第9條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7. (생략)	1. <u>피성년후견인</u> 2. ~ 7. (현행과 같음)
담배사업법 (안 제2조)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 한정후견인</u> 2. ~ 6. (생략)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 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 록을 할 수 없다.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 -----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 한정후견인</u> 2. ~ 6. (생략)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략)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 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	② ----- ----- ----- -----

현행	개정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u>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u> 나. ~ 바. (생략) 2. ~ 4. (생략) ③ (생략) 법률 제12269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제14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에 따른 <u>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 견인</u>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 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 로 본다.	-.----- ----- -----. 1. ----- ----- <u>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269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 ----- ----- -----<u>피성년후견인</u>----- ----- -----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안 제3조)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u>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u> 2. ~ 8. (생략)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법률 제14046호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u>피성년후견인</u> 또는 <u>피한정후 견인</u>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 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 로 본다.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4046호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 -----<u>피성년후견인</u>----- ----- ----- ----- ----- -----.

문의처

02)6788-5150